

9.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2월 28일
- 발 의 자 : 이시복 의원,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윤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하병문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3월 18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시복 의원)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기기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 감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정보의 제공,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 **안 제6조**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간 대구시에서 2010. 9월부터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내 ‘대구광역시 보조기기 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수리 등 사례관리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안 제7조**는 보조기기센터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로 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 **안 제9조**는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2018년 12월말 기준 대구시 등록장애인은 123,000여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3,000여 명으로, 장애인과 노인 인구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구시 장애인 및 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 (비율)	115,983 (4.65%)	115,694 (4.65%)	117,111 (4.71%)	119,766 (4.83%)	123,070 (4.99%)
노인 (비율)	303,537 (12.2%)	316,122 (12.7%)	328,901 (13.2%)	347,459 (14.0%)	362,934 (14.7%)

- 본 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대구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음.

- 다만,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 지원사업, 대구시 보조기기센터, 권역별 수리지원센터 등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몰라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호흡장애인에게는 산소호흡기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기이므로, 소수의 호흡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러한 보조기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